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운용세칙」에 따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문장 정비</p>
	<p>제1조의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규정” 및 “대출세칙”이란 각각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을 말한다. 2. “운용세칙”이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말한다. 3. “인천본부”란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말하며, “본부장”이란 인천본부의 본부장을 말한다. 4. “인천본부 담당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를 말한다. 5.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란 대출규정, 대출세칙 및 운용세칙에 따라 인천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금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되 비영리법인인 제외한다. 	<p>- 정의규정 신설</p> <p>- 비영리법인 제외 명시</p>
<p>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운전자금대출 및 원화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운전자금대출 및 원화시설자금대출 실적 	<p>제2조(지원대상 대출실적)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원화대출실적을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당시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p>- 문장 정비</p> <p>- 대출 실행 당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명시</p> <p>-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한 지원요건 증명 근거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특별지원부문, 전략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p> <p>② 특별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p> <p>③ 전략지원부문 한도는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제외한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④ 일반지원부문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p>	<p>제3조(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① ----- 전략지원부문, 특별지원부문 및 일반지원부문-----</p> <p>(삭 제)</p> <p>② 전략지원부문 및 특별지원부문 한도는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략지원부문 한도는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40% 이상으로 한다.</p> <p>③ ----- 전략지원부문 및 특별지원부문에 배정하고 남은 한도에서 배정한다.</p>	<p>- 지원부문 순서 변경 (전략·특별·일반 順)</p> <p>- 부문별 한도배정 자율화 (운용세칙 제5조, 제6조)를 반영</p> <p>- 항 올림</p> <p>- 항 올림, 문장 정비</p>
<p>제4조(지원대상 중소기업)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별표 1>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으로 한다.</p> <p>1. ~ 13. (생략)</p>	<p>제4조(지원대상업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별표 1>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p> <p>1. ~ 13. (현행과 같음)</p>	<p>- 문장 정비</p>
<p>제6조(전략지원부문)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4조 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전략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액 전략지원부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지원부문 대상대출을 제7조의 일반지원부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대출의 배정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p> <p>⑥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전략지원부문에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p>	<p>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4조제6호(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제10호(농림수산업 관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인천본부 담당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40억원이며,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억원으로 본다)-----.</p> <p>(삭 제)</p> <p>(삭 제)</p>	<p>- 현행 제6조를 제5조로 이동하고 현행 제5조는 제6조에서 규정</p> <p>- 문장 정비</p> <p>- 일반지원부문 전환 관련 내용을 6조의2로 이동</p> <p>- 일반지원부문 전환 관련 내용을 6조의2로 이동</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특별지원부문) ① 특별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기업 2. (생략)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성중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정대상에 포함)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366일)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실적으로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③ (생략)</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특별지원부문 한도를 소진하여 전액 특별지원부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특별지원부문 대상대출을 제7조의 일반지원부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대출의 배정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p>	<p>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 대상으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본부 담당지역----- 2. (현행과 같음) 3.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 -----(------, -----) ----- 포함한다) <p>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실적으로 대상으로 지원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20억원이며,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본다)-----.</p> <p>(삭제)</p>	<p>- 현행 제5조를 제6조로 이동하고 현행 제6조는 제5조에서 규정</p> <p>- 문장 정비</p> <p>- 특별지원부문 상시화 반영, 문장 정비</p> <p>- 문장 정비</p> <p>- 일반지원부문 전환 관련 내용을 6조의2로 이동</p>
<p>(신설)</p>	<p>제6조의2(일반지원부문의 전환) ① 본부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방법으로 배정하면 전략지원부문 또는 특별지원부문의 한도로 지원대상 대출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일반지원부문의 전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우선순위의 대출을 전략지원부문 또는 특별지원부문의 배정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대출은 일반지원부문의 전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차보전을 받지 않는 대출 2. 지원부문별로 다음 각 목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략지원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별표 1-1>의 항공 또는 로봇산업 2순위 :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중 1순위 외의 기업 	<p>-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 운용 방식(우선순위제를 적용한 일반지원부문 전환)을 규정으로 포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u>나. 특별지원부문</u> <u>1순위 : 조선업, 운수업, 해운업 또는 여행업 영위 기업</u> <u>2순위 : 특별지원부문 대상 업종 중 1순위 외의 기업</u> <u>3. 제8조제2항에 따른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이 적은 기업에 대한 대출</u> <u>4. 담보나 보증 없이 취급된 순수신용대출(다만,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한 보증 대출은 포함한다)</u></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은 후순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환 시 우선순위는 제2항을 적용한다. <u>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실적</u> <u>2. 대출 취급일이 보고년월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실적</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되는 기업은 제6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 <u>⑤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 실적은 대환 등을 통하여 다른 지원부문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u></p>	<p>- 신규 지원대상 기업 발굴 유인 제공</p> <p>- 우선순위제에서 후순위 간주 사유를 명시</p> <p>- 전략지원부문에서 일반지원부문으로 전환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p> <p>- 대환 등을 통한 지원부문 전환 불가</p>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일반지원부문은 제4조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 제5조(특별지원부문) 및 제6조(전략지원부문)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 다만,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5항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신 설)</p> <p>② · ③ (생략)</p> <p>④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간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5항에 따라 배정된 경우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6조 제4항을 적용한다.</p> <p>⑤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본부 중소기업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p>	<p>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일반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 <p>1. 제4조의 지원대상기업 중 제5조(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특별지원부문)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지원부문이 전환된 기업</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20억원이며,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으로 본다)----- . 다만, 전략지원부문에서 전환 배정된 업체의 지원한도는 제5조제4항을 적용한다.</p> <p>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이 조에 따라 자금을 배정한 후 남은 한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지원부문에 재배정한다.</p>	<p>- 문장 정비</p> <p>- 문장 정비</p> <p>- 문장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 지원 금액(지원기간 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 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 ----- ----- <단서 삭제> -----</p> <p>② 제1항의 지원기간이 누적하여 ----- -----, 지원기간 동안의 ----- -----(------ 금액 을 말한다)-----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한다)----- -----.</p>	<p>- 시설자금대출도 1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 개정</p> <p>- 문장 정비</p> <p>- 문장 정비</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지원자금) 본부장은 제4조 제11호(명절·재해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자금) 본부장은 제4조제11호(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및 제12호(기타 지원기업)에 따른 자금 지원 시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 문장 정비</p>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금 2.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3.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4. (생략) 5.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대출 제외) 7. ~ 8. (생략) 	<p>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2.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다른 규정 등에 따라 ----- 5. -----(이차보전대출을 제외한다) 6. ~ 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p>-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당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p> <p>- 호 올림, 표현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을 해당일로 본다) 인천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p> <p>6.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p> <p>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p> <p>(신설)</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자료제출) ① ----- 매월 12일----- (-----) 인천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 (삭제)</p> <p>5. <u>창업중소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u></p> <p>6. <u>그 밖에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인천본부에 제출된 자료를 적시에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전월 말까지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p> <p>1. 제출기한 전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비영업일이 3일 이상 있는 경우</p> <p>2. 전쟁 또는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정보통신수단 또는 우편수단이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마비된 경우</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금융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 및 자료가 제출형식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본부장은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된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않거나 해당 대출을 대출실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 제출기한 변경 (매월 15일 → 12일)</p> <p>-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삭제, 창업중소기업 확인서 서식번호 변경</p> <p>- 호 내림</p> <p>- 영업일 수 문제 등으로 제출기한 준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특례 신설</p> <p>- 항 내림</p> <p>- 금융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의무 명확화</p> <p>- 제출 착오 실적에 대한 제외 가능성 명문화</p>
<p>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13조(제재) ① -----</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제10조 제1호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제10조 제3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	2.5배 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출 제10조제2호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가 누락 및 지연된 대출	2.5배 이내	- 제출된 보고서와 지원부문 등의 주요내용이 다른 경우 2.0배 이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0조 제2호에 따른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신 설)	2.0배 이내	제2조의 지원대상 대출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제10조제1호의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내용이 상이한 대출 등	2.0배 이내	
제10조 제4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¹⁾	제10조제3호에 따른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¹⁾	
주: 1)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생 략) (신 설)		주: 1)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임)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 위임 근거 신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규정, 대출세칙과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문장 정비 - 조 내림
(신 설)		부 칙 <2023. 8.> 제1조(시행일 등) 이 기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C2자금 전략 및 특별지원부문 운용방식 안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시행일 규정 - 경과조치 규정

현행			개정안			비고
<p><별표 1>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p>			<p><별표 1>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p>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전산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¹⁾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며 창업 후 3년이내인 제조업* 영위기업(금융기관 결제모집장이 확인<별지 5호 서식>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3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는 제조업* 영위 기업(금융기관 결제모집장이 확인<별지 5호서식>한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 A1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반영 인천본부 담당지역 내로 소재지를 제한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A2 : 문장 간소화
A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INNO-BIZ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및 MAIN-BIZ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기술평가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협약체결 금융기관이 대출금원장에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임을 명기하거나 대출 취급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확인한 경우에 한함 - 특허권* 보유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보유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대출시점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한 유효한 실용신안권 -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참여 기업 	A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창업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INNO-BIZ기업 및 MAIN-BIZ기업 -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연 Collabo R&D'사업 참여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 혁신기업(A3)의 경우, · MAIN-BIZ 기업도 창업 7년 초과 시에만 지원 · 기술평가인증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를 사유로 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 ·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 협약과제 완료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하는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신규 지원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등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인증(설비인증)을 받은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득한 기업 	- A4 : 문장 간소화
A6	추천기업	(생략)	A6	추천기업 ²⁾	(현행과 같음)	- A6 : 추천액수가 지원신청액 보다 적을 경우 추천액수 만큼만 지원하며, 증빙에 해당하는 대출만 지원(주 2)

현행			개정안			비고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정기준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입관련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로 기업 포함 - <별표 1-1>의 해당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대출시점 기준)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중 및 제 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p>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1-1>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 - <별표 1-1>에 해당하는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제외)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중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A8)의 경우, ·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영위 기업도 창업 후 7년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다만, 녹색기업·수출관련 기업은 현행과 같이 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 협약과제 완료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지원
A9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A9	전입기업	- 타 지역으로부터 인천본부 담당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조업* 영위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 ~ 34	- 전입기업 (A9)의 범위를 창업 기업과 동일하게 전입 3년 이내의 제조업 기업으로 축소
A10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A10	수출관련기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또는 수출유망중소기업	- A10 : 관련 프로그램 변경 사항 반영
A11		(생략)	A11		(현행과 같음)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농업·임업·어업* 영위 중소기업 또는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01 ~ 0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A13) 중 사무화된 요건인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부분을 삭제
A14	명절 및 재해자금 필요기업	(생략)	A14	명절·재해 자금 필요기업 등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A16	경기부진·업종영위기업	(생략)	A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현행과 같음)	- 띄어쓰기 수정
<p>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로 제한 (신설)</p> <p>2)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매출액,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p>			<p>주: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로 제한</p> <p>2) 추천금액과 대출 실행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출된 증빙으로 금리를 감면받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원</p> <p>3)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매출액,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다만, 사업계획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한정)</p>			- 주된 사업 판단 시 사업계획서로 판단하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2년 이내로 제한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별표 1-1>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			- 운용기준 표준안에 맞추어 통일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산업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¹⁾			<별표 2>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¹⁾			- 주류·담배 도매업과 약국(의약품 및 의약품 소매업)을 배정 제외 업종에 추가 - 세부업종이 681, 682 뿐인 부동산업을 통합 - 법무사업(71103),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공증인·집행관·노무사 등),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71209)을 배정 제외 업종에 추가 - 공중 보건 의료업(863), 유사 의료업(869, 침구치료·안마원·조산원 등)을 배정 제외업종에 추가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통합하고, 무도장 업종의 순서를 업종코드에 맞추어 변경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신설)		도소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주점업 금융관련업	(생략)			47811 의약품 및 의약품 소매업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주점업 금융관련업	(현행과 같음)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01 변호사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2 변리사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 공인회계사업			7151	회사본부	
	71202 세무사업					
수의업 인력공급업 ²⁾ 사업지원 서비스업	(생략)		수의업 인력공급업 ²⁾ 사업지원 서비스업	(현행과 같음)		
보건업	861 병원		보건업	86	보건업	
	862 의원			노래방	91223	
노래방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삭제)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도박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무도장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신설)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현행과 같음)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생략)					

주: 1) 해당 업체가 지원제외 업종의 다른 지원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3) 등록된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도박, 성인용품 등 불건전,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

주: 1) 해당 업체가 지원제외 업종의 다른 지원대상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시에 한정하여 적용 제외
 3) 등록된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도박, 성인용품 등 불건전,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체의 경우 제외

현	개	정	안	비	고
<p><별지 제3호 서식></p> <p>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p> <p>(년 월중)</p> <p>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회) 부(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주: 1) ~ 2) (생략)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인천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 11) (생략)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한연장인 경우 당초 상환기일을 기입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 16) (생략)</p>	<p><별지 제3호 서식></p> <p>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p> <p>(년 월중)</p> <p>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 부(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주: 1) ~ 2) (현행과 같음)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 11) (현행과 같음)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여 신청하는 경우 당초 상환기일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만기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 16) (현행과 같음)</p>	<p>- 한국은행법 등 개정 반영</p> <p>- 자구 수정</p>			
<p><별지 제4호 서식></p> <p>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p> <p>(년 월중)</p> <p>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회) 부(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별지 제4호 서식></p> <p>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p> <p>(년 월중)</p> <p>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은행 부(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현행과 같음)</p>	<p>- 한국은행법 등 개정 반영</p>			
<p><별지 제5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data-bbox="159 245 358 268"><별지 제6호 서식></p> <p data-bbox="443 316 705 343" style="text-align: center;">창업중소기업 확인서</p> <p data-bbox="481 357 667 379"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data-bbox="174 429 976 454">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앞 _____ 은행(회) 부(점)장 (인)</p> <p data-bbox="539 493 607 515"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 data-bbox="203 560 940 671"> 주: 1) 운용기준 제4조 제1항 1호의 창업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제조업 영위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33)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업종으로 표기된 경우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p> <p data-bbox="539 707 607 729" style="text-align: center;">(생 략)</p>	<p data-bbox="987 245 1187 268"><별지 제5호 서식></p> <p data-bbox="1274 316 1536 343" style="text-align: center;">창업중소기업 확인서</p> <p data-bbox="1319 357 1505 379"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data-bbox="1003 429 1805 454">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앞 _____ 은행 부(점)장 (인)</p> <p data-bbox="1341 493 1469 515"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32 560 1769 671"> 주: 1) 운용기준 제4조제1항제1호의 창업기업*으로 신청시 작성 *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인천본부 담당지역 소재 제조업 영위기업(한국 표준산업분류코드 10~34)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업종으로 표기된 경우 제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p> <p data-bbox="1341 707 1469 729"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 data-bbox="1823 245 1989 268">- 서식 번호 변경</p> <p data-bbox="1823 437 2069 459">- 한국은행법 등 개정 반영</p> <p data-bbox="1823 584 2092 60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반영</p>